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2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6일

발의자 :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리 기한상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결과통보 기한을 60일로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통보받은 감사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11조)

나. 감사결과 통보 기한을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주택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8. ~ 2024. 11.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3”을 “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대 당”을 “세대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인은 각 세대 당 1인으로 한다.	제3조(감사의 요청) ① ----- ----- ----- ----- ----- ----- ----- 2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생략)	제4조(감사계획 수립)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 ----- 60일 ----- ----- ----- ----- ----- ----- ----- ----- 법 제27조제3항 ----- -----
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	② -----

체는 <u>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u>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u>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게시판, 서울특별시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u> ---. ③ (현행과 같음)
---	--